##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배·김선교

서일준 • 김정재 • 임이자

박성훈 • 백종헌 • 정동만

김소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. 공포)에 따라 "특별채용"의 명칭이 "경력경쟁채용"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.

「경찰공무원법」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7조제6항, 제20조제2항, 제24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 본문 중 "특별채용할"을 "경력경쟁채용할"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"특별채용되기"를 "경력경쟁채용되기"로, "특별채용시험을"을 "경력경쟁채용시험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특별채용된"을 "경력경쟁채용된"으로, "특별채용되는"을 "경력경쟁채용된"으로, "특별채용되는"을 "경력경쟁채용된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특별채용된"을 "경력경쟁채용된"으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"특별채용의"를 "경력경쟁채용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특별채용과"를 "경력경쟁채용과"로, "특별채용은"을 "경력경쟁채용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⑤	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	6
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	
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	
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	
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	
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특	<u>경력</u>
별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신체	<u>경쟁채용할</u>
•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	
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	
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	
하지 아니하다.	
제20조(인사교류) ① (생 략)	제20조(인사교류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으
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	②
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	
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	
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<u>특별</u>	<u>경력경</u>
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	<u> 쟁채용되기</u>
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	
령으로 정하는 <u>특별채용시험을</u>	<u>경력경쟁채용</u>

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 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하다.

### ④ (생 략)

- 제24조(<u>특별채용의</u> 특례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따른 <u>특별채용과</u> 「군무원인사법」제7조제2항제 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 의 <u>특별채용은</u>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.

시험을
③
경력경쟁
채용된
<u>경력경쟁채용되는</u>
,
<u>경력경쟁채용된</u>
 ④ (현행과 같음)
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
(현행과 같음)
②경력경쟁채용
<u>과</u>
<u>경력경쟁채용은</u>